

영진고등학교 학교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영진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57길 9 (북현동)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 ① 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정책 변화로 휴업일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년도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휴업을 실시하거나 관할청의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을 받아 휴업을 실시할 경우 다음 회기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학년당 8학급씩 전체 24학급으로 한다. 단, 24학급 인가 내에서 연도에 따라 1학급 증감할 수 있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생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수업일수·시험·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2015개정 교육과정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정)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되, 교육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① 학교는 학생이 3년간 192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학기별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한다.
- ② 학생은 공동교육과정, 대구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수강, 학교 자체 학점 증배 운영 등으로 인해 192학점(교과 174학점 및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초과하는 학점 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학기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졸업에 필요한 미이수 과목 학점 수만큼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는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학기당 이수 과목수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11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주5일 수업 실시 또는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청에 보고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험)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 기말시험)과 수행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성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학년 과정 수료의 인정) 각 학년 과정의 수료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인정된다.

제14조(졸업)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

제15조(입학)

- ①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해 배정을 받아야 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교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편)입학은 법령 등에 의거 교육과정이 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

- ① 퇴학(제적, 자퇴 포함)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당해 정원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본교의 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당해 학교에 정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 ③ 재입학 허용 시기는 제3학년 1학기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④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17조(편입학)

- ① 본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였으나 재입학을 허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 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천할 수 있다.
- ② 본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 ③ 편입학 방법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8조(전학)

-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서약서) 본교에 입학(전·재·편입학을 포함)을 허가 받은 자중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20조(휴학)

- ① 본교의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고 할 때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휴학원과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보호자(부득이 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을 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한다. 다만, 휴학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초일부터 복학할 수 있다.

제21조(자퇴)

- ① 본교의 학생이 스스로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려고 할 때에는 자퇴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보호자(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자퇴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전·편입학) 학교장은 특례 귀국자, 일반귀국자, 외국인 학생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입·전·편입학을 신청한 경우에 귀국자자녀편입학규정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하고 해당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학습부진아 교육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본교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을 위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업무에 관련되는 보직교사 2인과, 당해 교과목 담당교사 각 2인(당해 교과목 담당 교사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 등급 타학교 해당 교과목 교사를 위촉할 수 있다)을 학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교사가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시험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 이수 평가 방법 및 시험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범위 결정
-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기초·기본 학력 보장)

- ① 본 규정은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 학력(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성취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1. 학교는 매 학기 초 및 학기 중에 기초·기본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2.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기본 학력이 부족하거나 최소성취수준 미달일 예상 학생을 조기에 선별한다.
- ③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1.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성취수준을 모든 학생이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 및 지원을 제공한다.
 2. 최소성취수준 미달 학생에게는 맞춤형 학습지도, 보충수업, 멘토링, 학습코칭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평가 및 관리

1. 기초·기본 학력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원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지원 방안을 개선한다.
2. 학생의 발달 상황을 기록·관리하며, 보호자와 공유한다.

제 7 장 비용 징수

제26조(수업료 및 입학금)

-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과 대구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 (기타 비용징수)

- ① 기타 비용징수는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8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이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⑧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⑨ 징계의 사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 ⑩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⑪ 학교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조직)

-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 임원 선거는 매년 학년말에 실시하되, 학생회 회장단의 정원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각 학년별 1명)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과 3학년 부회장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차 학년도에 3학년이 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출하고, 2학년 부회장은 차 학년도에 2학년이 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출하며, 1학년 부회장은 당해 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피선거격, 선거방법 및 선거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도교사를 배치한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
 -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31조(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희망과 학생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예산에 지원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10 장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32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육활동보호)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②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④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⑤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⑥ 교육지원청 사안조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⑦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⑧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단계별 대응방안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른다.

제 11 장 학칙개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학칙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발의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시행규정)

- ① 본교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의 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규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정 1980. 01. 24.

개정 1980. 09. 24.

개정 1981. 11. 12.

개정 1986. 10. 16.

개정 1997. 06. 07.

개정 1998. 10. 22.

개정 1999. 09. 15.

개정 2003. 02. 10.
개정 2004. 09. 01.
개정 2006. 08. 21.
개정 2007. 12. 04.
개정 2011. 08. 01.
개정 2013. 06. 05.
개정 2025. 11. 11.
개정 2026. 06. 29.